

##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1526호

「기반시설 성능개선 총당금 운용규정」을 제정함에 있어,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30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# 「기반시설 성능개선 총당금 운용규정」 제정(안) 행정예고

#### 1. 제정이유

「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」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주체가 소관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른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성능개선 총당금 적립 및 기금 마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기반시설 관리계획에 따라 관리주체가 성능개선 총당금 적립 및 사용을 위한 총당금 운용계획 수립(안 제4조)
- 나. 관리주체별 총당금 확보목표 설정 및 성능개선 총당금 적립(안 제5조)
- 다. 성능개선 총당금의 적립을 위한 재원 활용 기준 마련(안 제6조)

- 라. 기금 또는 특별회계 설치·운영 등 성능개선 총당금의 회계처리 방안 등 근거 마련(안 제7조)
- 마. 총당금 사용계획서 및 미사용사유서 제출 등 총당금 운용계획에 따른 성능개선 총당금 사용에 관한 절차 마련(안 제8조)
- 바. 관리주체가 성능개선 총당금을 사용하면서 국비 또는 지방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 등의 절차 마련(안 제9조)
- 사. 관리주체가 운용계획 상 계획한 성능개선사업 외 다른 목적으로 총당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부정행위 등 금지(안 제10조)
- 아. 성능개선 비용으로 지원받은 정부 지원금의 반납 및 환수 기준 및 근거 마련(안 제11조)

### 3. 의견제출

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제정안	수정안	의견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30103) 세종자치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
- 전자우편 : young9652@korea.kr
- 팩스 : 044-201-5575

#### 4. 그 밖의 사항

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『정책자료-법령정보-입법예고·행정예고』란을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(044-201-4159, 499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